



[충남경제진흥원]
2020. 01.

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지원사업 (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) 과업지시서

2020. 1.



충청남도경제진흥원
ChungCheongNam-Do Economic Promotion Agency

과업지시서

1. 과제명 :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지원사업(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)

2. 추진 배경

- 수출업체의 협력사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이며 수출업체 또한 발급된 확인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
 - (협력사) FTA로 인한 직접혜택은 없는 반면, 원청업체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대한 거부감과 복잡한 서류 등으로 인한 업무부담
 - (수출업체)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 사후검증시 추징금과 대외 신인도 저하 등의 피해 우려

3. 과제 개요

- (목적) 수출업체의 과도한 자료 요구 등 원산지확인서 발급·관리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·협력기업간 신뢰성을 제고하여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
- (주요 내용) 거래 당사자 이외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(지역FTA활용지원센터)이 중소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·확인
- (계약기간) 계약일로부터 ~ '20. 12. 15.(화)까지

4. 과업 지시 내용

- (운영원칙) 관세법인의 확인자(FTA전문가)가 원산지확인서 및 근거서류 검토·확인, 서명 후 충남FTA활용지원센터 명의의 확인결과서 발급
 - 원산지확인서 최초 작성업체 또는 제출 서류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밀착 관리
 - (사업범위) 원산지확인서의 발급 지원, 정합성 검토 등을 비롯하여 필요시, 협력사에 대한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컨설팅으로 확대
 - 원재료에 대한 HS코드 확인, 제조공정도·BOM 작성방법, 확인서 검증, 근거서류 보관 등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전반 지원
 - 잘못 발행된 확인서에 대한 원인분석, 비(非) 국내산 판정의 경우 원인 분석 및 국내산으로의 변경 가능성·방법 등 컨설팅
 - (목표 물량) 65개사, 91건(품목수 기준) 품목 이내
 -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정(대기업 제외)
 - 업체별 일수는 3MD 이하, 품목(HS Code 기준) 수는 3개 이하로 제한
 - 원산지확인서 검토결과서 발급 건당 88만원(부가세 포함)
 -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비역내산 품목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(건당 44만원 수준)의 비용을 반영
- ※ 비역내산 품목의 검토보고서의 경우 1개사 1건만 인정

- (수요기업 발굴) 관세법인에서 수요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FTA센터로 접수된 건은 관세법인에 인계
- (사전진단 및 지원승인) 관세법인은 업체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방문일수 등을 포함한 컨설팅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고, 센터에서는 검토 후 지원 승인
- (수행결과보고) 업체별로 컨설팅이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센터에 결과보고서 제출, 센터에서는 최종검토 후 검토결과서에 센터장 직인 날인 후 관세법인(사본) 및 업체(원본)에 제공
 - 확인서 발급실적, 컨설팅 수행실적이 포함된 중간 보고서는 2020. 7월 중순까지 서면 제출
 - 사업이 최종완료되면 확인서 발급실적, 컨설팅 수행실적, 개선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완료 보고서와 업체별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FTA센터에 제출
- (비용지급) 매월 말일까지 관세법인이 제출한 업체별 컨설팅 완료 결과보고서 기준으로 센터는 익월 첫째주까지 관세법인에게 비용 지급
- (보안각서) 신청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지역센터의 신뢰성 보장

5. 사업진행 절차



6. 기대효과

-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 및 확인함으로써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
-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,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 완화 기대
-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가능